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3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정춘숙・김민기・강훈식

남인순 · 박재호 · 이용빈

김한정 • 윤미향 • 김성주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의료기관단체,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제2 호). 법률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
회) ① ~ ④ (생 략)	회) ① ~ ④ (생 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5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2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u>의료기관단체 및</u>	의료기관단체, 「약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	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
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
	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u>람</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